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0호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I. 시험일정

시 험 명	원서 접수기간 [취소마감일]	추가 취소기간	시험방법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3.12.(수) ~ 3.14.(금)	-	서류전형 (1차)	-	3.19.	3.20.
			면접시험 (2차)	3.20.	3.25.	3.28.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3.10.(월) ~ 3.14.(금) [3.17.(월)]	3.26.(수) ~3.28.(금)	필기시험 (1·2차병합)	4. 8.	4.26.	5.13.
			면접시험 (3차)	5.13.	5.22. ~ 5.23.	5.29.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3.24.(월) ~ 3.28.(금) [3.31.(월)]	5.21.(수) ~5.23.(금)	필기시험 (1·2차병합)	6. 4.	6.21.	7.18.
			면접시험 (3차)	7.18.	8. 4. ~8. 8.	8.14.
제4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7.21.(월) ~ 7.25.(금) [7.28.(월)]	9.30.(화) ~10.2.(목)	필기시험 (1·2차병합)	10.15.	11.01.	11.21.
			면접시험 (3차)	11.21.	12. 3. ~12. 4.	12.11.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전북소식(시험채용)에 공고하며, 개별통보(전화, 문자 등)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재해·재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II.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①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예정 인원	임용기관	시험과목
계			38		
7급	행정	노동	2	정읍1, 남원 1	서류전형(1차)+면접시험(2차) ※ 필기시험 없음
	수의	수의	32	전북도 20, 전주 2, 군산 1, 익산 2, 정읍 1, 남원 2, 김제 1, 진안 1, 장수 1, 고창 1	
연구사	수의 연구	수의	4	전북도 4	

②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예정 인원	임용기관	시험과목
계			51		
9급	공업	일반기계	3	익산 2, 김제 1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기계 (무대기계)	1	남원 1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기계 (무대음향)	1	남원 1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4	익산 1, 김제 1, 고창 2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전기 (무대조명)	1	남원 1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해양 수산	선박항해	1	군산 1	필수(3) : 물리, 선박일반, 항해
		선박기관	1	전북도 1	필수(3) :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일반선박	2	고창 2	필수(3) : 물리, 선박일반, 기관일반
	의료 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3	남원 1, 임실 1, 고창 1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의료기술 (방사선사)	1	전주 1	
		의료기술 (치과위생사)	5	정읍 1, 남원 1, 김제 1, 임실 1, 고창 1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1	김제 1	
		의료기술 (작업치료사)	1	부안 1	
	환경	일반환경	1	익산 1	필수(3) :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수질	1	고창 1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예정 인원	임용기관	시험과목
9급	방송 통신	통신기술	5	전북도 1, 익산 1, 진안 2, 부안 1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운전	운전	9	익산 1, 남원 4, 장수 1, 부안 3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운전 [보훈청 추천]	5	전북도 1, 군산 1, 김제 2, 진안 1	
		운전(굴착기) [보훈청 추천]	1	남원 1	
		운전(불도저) [보훈청 추천]	1	남원 1	
		운전(굴착기)	3	전주 3	

③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예정 인원	임용기관	시험과목
계			643		
8급	간호	간호	24	군산 5, 정읍 4, 남원 5, 진안 2, 장수 3, 임실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 진료	보건진료	16	익산 1, 남원 5, 진안 2, 무주 2, 장수 2, 임실 2, 부안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
9급	행정	일반행정 [도·시군]	160	전북도 3, 전주 13, 군산 20, 익산 12, 정읍 21, 남원 15, 김제 10, 완주 11, 진안 6, 무주 12, 장수 10, 임실 10, 순창 7, 고창 5, 부안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일반행정 [의회]	14	전북도 8, 익산 2, 남원 3, 김제 1	
		일반행정 [장애인]	37	전북도일괄 37 (전북도 4, 전주 2, 군산 3, 익산 1, 정읍 9, 김제 2, 완주 3, 진안 1, 무주 1, 장수 3, 임실 2, 고창 4, 부안 2)	
		일반행정 [저소득층]	16	전북도일괄 16 (전주 2, 군산 1, 익산 1, 정읍 2, 남원 1, 김제 1, 완주 1, 진안 1, 무주 1, 장수 1, 임실 1, 순창 1, 고창 1, 부안 1)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예 정 인 원	임용기관	시험과목
9급	세무	지방세	19	전주 4, 군산 3, 익산 4, 정읍 2, 완주 1, 진안 1, 무주 1, 장수 1, 임실 1, 순창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지방세 [장애인]	5	전북도일괄 5 (군산 1, 익산 1, 정읍 1, 김제 1, 진안 1)	
		지방세 [저소득]	1	익산 1	
	전산	전산	11	전주 1, 군산 2, 익산 2, 정읍 1, 완주 1, 장수 1, 고창 2, 부안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전산 [장애인]	2	진안 1, 고창 1	
	사회 복지	사회복지	27	전주 4, 군산 4, 익산 6, 정읍 2, 남원 8, 김제 1, 장수 1, 순창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 [장애인]	9	전북도일괄 9 (전주 1, 군산 2, 익산 1, 정읍 1, 김제 1, 장수 1, 순창 1, 부안 1)	
		사회복지 [저소득층]	4	전북도일괄 4 (전주 1, 군산 1, 남원 1, 진안 1)	
	사서	사서 [도·시군]	14	전주 3, 군산 3, 정읍 1, 남원 3, 김제 1, 장수 1, 임실 1, 부안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서 [의회]	1	전북도 1	
		사서 [장애인]	2	전북도일괄 2 (남원 1, 김제 1)	
	공업	일반기계	8	전북도 1, 전주 1, 군산 2, 김제 1, 완주 2, 부안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농업기계	2	정읍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일반전기	10	전북도 2, 전주 2, 군산 1, 정읍 1, 김제 1, 무주 1, 장수 1, 부안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11	전주 2, 군산 2, 익산 2, 김제 1, 무주 1, 고창 2, 부안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예정 인원	임용기관	시험과목
9급	농업	일반농업	21	전북도 2, 군산 1, 익산 3, 정읍 1, 남원 2, 김제 1, 완주 2, 진안 1, 장수 1, 임실 1, 순창 2, 고창 3, 부안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일반농업 [장애인]	4	전북도일괄 4 (남원 1, 장수 1, 고창 2)	
		일반농업 [저소득층]	2	전북도일괄 2 (장수 1, 고창 1)	
		축산	10	익산 1, 정읍 1, 김제 1, 완주 1, 장수 2, 임실 2, 고창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축산 [장애인]	1	장수 1	
	녹지	산림자원	21	전북도 1, 전주 2, 군산 2, 익산 1, 정읍 1, 남원 3, 완주 1, 진안 2, 무주 2, 임실 2, 순창 1, 고창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산림자원 [장애인]	1	남원 1	
		조경	2	장수 1, 임실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조경계획
	해양수산	일반수산	10	전북도 2, 군산 1, 임실 1, 고창 4, 부안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일반수산 [장애인]	3	고창 3	
	보건	보건	18	군산 2, 익산 2, 남원 3, 김제 1, 완주 2, 진안 1, 무주 2, 장수 1, 순창 2, 부안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보건 [장애인]	4	전북도일괄 4 (군산 1, 진안 1, 장수 1, 순창 1)	
	식품위생	식품위생	4	군산 1, 정읍 1, 고창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환경	일반환경	19	전북도 1, 전주 4, 군산 1, 정읍 1, 남원 1, 김제 1, 완주 2, 진안 3, 임실 1, 고창 4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일반환경 [장애인]	3	고창 3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관	시험과목
9급	시설	도시계획	3	익산 1, 정읍 1, 순창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일반토목 [도·시군]	49	전주 4, 군산 2, 익산 8, 정읍 1, 남원 1, 김제 2, 완주 4, 진안 5, 무주 4, 장수 3, 임실 1, 순창 5, 고창 6, 부안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일반토목 [의회]	1	전북도 1	
		일반토목 [장애인]	1	장수 1	
		건축	38	전주 5, 군산 2, 익산 8, 정읍 1, 남원 3, 김제 1, 진안 3, 무주 3, 장수 1, 임실 1, 순창 2, 고창 6, 부안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 [장애인]	2	전북도일괄 2 (남원 1, 장수 1)	
		지적	9	전주 1, 익산 3, 남원 2, 김제 1, 진안 1, 고창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지적 [장애인]	1	남원 1	
	방재안전	방재안전	15	전주 1, 군산 3, 익산 3, 남원 1, 완주 1, 진안 3, 무주 1, 임실 1, 고창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	통신기술	8	전주 2, 군산 1, 정읍 2, 진안 1, 무주 1, 장수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④ 제4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관	시험과목
계			5		
7급	행정	일반행정	5	전북도 3, 전주 2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예정 인원	임용기관	시험과목
계			73		
9급 (기술계고)	공업	일반기계	4	전북도일괄 4 (전주 1, 익산 2, 정읍 1)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일반전기	2	전북도일괄 2 (전주 1, 진안 1)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농업	일반농업	5	전북도일괄 5 (익산 1, 진안 1, 순창 1, 고창 1, 부안 1)	필수(3) : 생물, 재배, 농업생산환경
		축산	1	정읍 1	필수(3) : 축산, 가축사양, 초지
	보건	보건	1	장수 1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설	일반토목	7	전북도일괄 7 (전주 1, 군산 1, 무주 1, 장수 1, 임실 1, 고창 1, 부안 1)	필수(3) : 물리, 토목일반, 측량
		건축	6	전북도일괄 6 (전주 1, 군산 1, 장수 1, 순창 1, 고창 1, 부안 1)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연구사	학예 연구	학예일반	2	고창 2
농업 연구		농식품개발	1	전북도 1	필수(2) : 식품학, 식품가공학 선택(1) : 실험통계학
		작물	3	전북도 3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선택(1) : 실험통계학
		원예	1	전북도 1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선택(1) : 채소학
		축산	2	전북도 2	필수(2) :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선택(1) : 가축번식학
녹지 연구		임업	2	전북도 2	필수(2) : 생물학개론, 조림학 선택(1) : 산림보호학
해양 수산 연구		수산양식	3	전북도 2, 남원 1	필수(2)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선택(1) : 수산생물학
보건 연구		공중보건	3	전북도 3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생화학
환경 연구		환경	3	전북도 3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생태학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관	시험과목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19	군산 2, 익산 3, 정읍 2, 남원 3, 완주 1, 진안 2, 장수 2, 임실 2, 고창 1, 부안 1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선택(1) : 농촌지도론
		원예	5	전북도 2, 군산 1, 무주 2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선택(1) : 농촌지도론
		농업기계	1	남원 1	필수(2) : 물리학개론, 농업동력학 선택(1) : 농촌지도론
		농촌생활	2	익산 1, 부안 1	필수(2) :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선택(1) : 농촌지도론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저소득층’, ‘장애인’ 및 제4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기술계고의 도일팔 구분모집은 면접시험 평정 결과와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순에 따라 임용기관을 우선 배정합니다.

Ⅲ. 시험방법

① 필기시험(1·2차 병합)

※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없습니다.

시험명	시험시간	직류·직급	과목수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10:00~10:40 (40분)	운전9급	2과목
	10:00~11:00 (60분)	운전9급 제외 모든 직류·직급	3과목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10:00~11:50 (110분)	모든 직류·직급	5과목
제4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10:00~11:40 (100분)	일반행정7급	5과목
	10:00~11:00 (60분)	기술계고, 연구사, 지도사	3과목

- 배점 및 문항 : 과목당 100점 만점이고, 과목별 20문항으로서, 4지 택1 선택형입니다.
- 시험시간은 각 과목별 20분입니다. (단, 2025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국어·영어 과목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직무와 밀접한 사고력 평가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국어, 영어 각 5분씩 연장 / (기존) 100분 → (변경) 110분)

- 합격 결정
 - (공개경쟁 임용시험)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인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경력경쟁 임용시험)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인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임용기관별 직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110% 선발(9급에 한해 적용)
 - * 연구사, 지도사, 8급간호, 보건진료 제외 / 임용기관별 직류 5명 미만 : 미적용
- 제4회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일반행정7급 필기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110%로 선발 (단, 선발예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으로 결정)

② 면접시험(3차)

-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면접 시험성적(우수, 보통, 미흡)만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평정등급에 따른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수 등급 : 합격 (단,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 보통 등급 :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우수 등급 인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 미흡 등급 : 불합격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고, 평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장소 및 일정, 면접조 편성,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IV. 응시자격

- ①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거나 응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이라 한다)

※ 응시결격사유 기준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② 응시연령

직 급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7·8·9급 및 연구·지도사	18세 이상 (2007. 12. 31. 이전 출생자)
9급(기술계고)	18세 이상 (2007. 12. 31. 이전 출생자) ※ 고교 3학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도 가능(2008. 12. 31. 이전 출생자)

③ 거주지 제한 :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해당 직류·직급의 거주지 제한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급	직렬	직류	임용기관	거주지 제한
7급	행정	노동	전체 임용기관	거주지 제한 없음(전국)
	수의	수의		
연구사	수의 연구	수의		

직급	직렬	직류	임용기관	거주지 제한
9급	행정	일반행정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p>※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p> <p>1.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p> <p>2.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2024년 12월 31일)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됨)</p>
9급 ~ 7급	행정	일반행정	전북도, 전주	<p>※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p> <p>1.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p> <p>2.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2024년 12월 3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됨)</p>
		일반행정 [장애인] [저소득층]	전체 임용 기관	
나머지 전체 직렬, 직류, 직급				
연구사·지도사				
9급 (기술계)	공업	일반기계	전체 임용 기관	<p>① 전북지역 내 소재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 거주지 제한 없음(전국)</p> <p>② 전북지역 외 소재 기술계고 졸업(예정)자</p> <p>※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p> <p>1.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p> <p>2.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2024년 12월 3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됨)</p>
		일반전기		
농업	보건	보건		
	일반토목			
시설		건축		

-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누적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연속하지 않은 월단위 계산은 잔여일수가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 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④ 학력 및 자격증·면허증 등 제한(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급	직렬	직류	자격증·면허증 등 제한
7급	행정	노동	공인노무사
	수의	수의	수의사
연구사	수의연구	수의	수의사

○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급	직렬	직류	자격증·면허증 등 제한	
9급	공업	일반기계	에너지관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단, 기능사의 경우 자격취득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 필요)	
		일반기계 (무대기계)	무대전문인(무대기계) 3급 이상 소지자	
		일반기계 (무대음향)	무대전문인(무대음향) 3급 이상 소지자	
		일반전기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일반전기 (무대조명)	무대전문인(무대조명) 3급 이상 소지자	
	해양수산	선박항해	항해사 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관사 1급 내지 6급	
		일반선박	기관사 1급 내지 6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술 (방사선사)	방사선사	
		의료기술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의료기술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	
	환경	일반환경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내지 3급	
		수질	기술사 : 수질관리 기사 : 수질환경 산업기사 : 수질환경 기능사 : 환경 (단, 기능사의 경우 자격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 필요)	
	9급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 : 정보통신 기사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산업기사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기능사 :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단, 기능사의 경우 자격취득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 필요)
			운전	제1종 운전면허(대형)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
		운전	운전 (굴착기)	제1종 운전면허(대형)와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
			운전 (불도저)	제1종 운전면허(대형)와 불도저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급	직렬	직류	자격증·면허증 등 제한
8급	간호	간호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내지 3급
	사서	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시설	지적	지적 기술사·기사·산업기사

※ 참고사항

1.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자격증·면허증인 경우 유의사항

- 1)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 취득여부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 2) 자격·면허증 등의 유효(소지)여부는 자격·면허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면허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해당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3) 자격·면허증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구사 또는 지도사의 경우 반드시 동일계통학과 추천서와 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 가능한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2. 운전직렬 응시자격요건 관련 유의사항

- 1)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대형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릅니다.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 9미터 이상)
 - ※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2) 군(軍)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군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3) 운전경력 인정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서류 제출 후에도 제출된 서류만으로 경력인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서류를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임

○ 제출서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충족여부 확인

-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 사업자등록업체에서 발행 (【별첨】서식9 사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또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상의 운전경력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운전경력증명서 :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에 대한 진위확인이 가능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제4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급	직렬	직류	학력 제한	
			공 통	관련학과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 (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 (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	작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원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축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식품 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보건연구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환경연구	환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원예		
		농업기계		
		농촌생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직급	직렬	직류	학력 제한	
			공 통	관련학과
9급 (기술계고)	공업	일반기계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 선발예정직류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또는 타 지역 소재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 선발예정직류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중 거주지 제한 요건 충족자로서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 포함 [추천서 접수기간 마감일(7.4.) 기준] * 종합안내서 참고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농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보건	보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시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		건축(건축설비)

1. 연구사(녹지·해양수산·보건·환경연구) : 석사학위 이상(단, 학예연구, 농업연구 : 학사)
2. 연구사·지도사는 대학교 총장 추천, 9급(기술계고)는 추천기간 내에 학교장의 추천서와 증빙서류를 도에 제출 및 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종합안내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취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V. 응시원서 접수

①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 구체적인 원서접수 및 취소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가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 7급·연구사·지도사(7,000원) / 8·9급(5,000원)
 - 응시수수료 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접수/취소기간(기간중 24시간 운영)

구 분	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
취소시간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24:00까지

-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노동7급, 수의7급, 수의연구(수의)〕 및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원서접수에 관한 절차는 [붙임1] 종합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응시수수료 환급 :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일부 또는 전액 환급됩니다.

- 1)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한 금액 환급)
- 2)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이나 취소기간(추가 취소기간 포함)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③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기간에만 취소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사진규격 : 3.5cm×4.5cm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표는 해당시험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및 임신부 응시자는 본인에게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붙임1] 종합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 수험생 참고 및 유의사항

① 필기시험 문제출제

-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되며,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 (예시) 9급 임용 필기시험이 2025. 6. 21.인 경우, 2025. 4. 30. 현재가 기준이 됨.
-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시험 과목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 과정이 적용됩니다.
 - 9급 고졸(예정) 경력경쟁 임용 시험과목 중 물리는 물리학 I, 생물은 생명과학 I,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

시험명	과목수	대상 과목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39개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공업화학, 공중보건, 교육학개론, 기계설계, 기계일반, 보건행정, 사회복지학개론, 식용작물, 안전관리론, 응용역학개론, 임업경영, 자료조직개론, 재난관리론, 재배학개론, 전기기기, 전기이론, 전자공학개론, 정보보호론, 정보봉사개론, 조림, 지방세법, 지역사회간호, 지적전산학개론, 지적측량, 컴퓨터일반, 토목설계, 통신이론,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환경공학개론, 화학, 화학공학일반,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제4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19개	(7급) 국어(한문포함), 행정법, 행정학, 헌법,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생물학개론 (기술계고) 건축계획, 건축구조, 기계일반, 기계제도, 물리, 생물, 재배, 전기기기, 전기이론, 측량, 토목일반

-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 공동 출제 과목

시험명	과목수	대상 과목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8개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가축사양, 가축육종, 수산일반, 수산경영,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제4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13개	(지도사) 재배학, 작물생리학, 원예학, 물리학개론, 농촌지도론 (연구사) 문화사, 한국문화사, 환경공학, 환경화학, 실험통계학 (기술계고) 농업생산환경, 환경보건, 공중보건

○ 충청권(전북, 충남) 공동 출제 과목

시험명	과목수	대상 과목
제4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6개	(연구사)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조림학, 식품학 (지도사) 농업동력학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및 호남권·충청권 공동출제 외 과목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자체 출제합니다.
- 호남권·충청권 공동출제 및 전북특별자치도 자체 출제과목 문제는 비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모두 회수합니다.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은 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② 필기시험 합격 관련

- 제2~4회 지방공무원 필기시험(4지 택1형,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시험명	결정 방법
공개경쟁 임용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경력경쟁 임용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 득점이 높은 순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 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인적성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③ 임용기관별 진출제한 기간

-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 또는 진출 제한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습니다.
(단, 임용권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4년의 진출 제한기간 이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할 수 없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임용기관별 진출제한 기간

시험구분	진출제한	임용기관
공개경쟁 임용시험	3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장수, 임실, 고창, 부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익산시의회, 남원시의회, 김제시의회
	5년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순창
경력경쟁 임용시험	4년	전체 임용기관

④ 기타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의 [전북소식] -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임용기관에 임용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경력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 외 세부사항은 **[붙임1] 종합안내서**에 수록하였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예측가능성 및 편의를 위하여 **[붙임2] 2025년 ~ 2027년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서**를 수록하였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1] 종합안내서와 [붙임2] 2025년~2027년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서는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의 일부로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원서접수 시스템 관련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기타 세부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총무과(공무원채용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3) 280-2266, 4218, 4219